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389
----------	------

발의년월일 : 2022. 09. 02.

발의의원 : 김태우,김재용,
김지만,류종우,
박종필,육정미,
이재숙,전경원
의원 (8명)

1. 제정 이유

최근 집 안에만 침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 미취업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청년들은 3중고에 시달려 사회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홀로 은둔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안 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및 실태조사 등(안 제6조~제7조)
- 라. 위원회의 심의(안 제8조)
- 마.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